

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

2008년 9월 26일

국 무 총 리 한 승 수

국 무 위 원
기 획 재 정 부 장 강 만 수
관

● 법률 제913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천분의 4”를 “1천분의 5”로, “1천분의 3”을 “1천분의 4”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

배당금액(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에 한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1항 중 “100분의 7”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전단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2장제4절의2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절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조세특례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07년 12월 31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9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전환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10절의4(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의4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

제100조의27(유가환급금)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4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가환급금을 소득세 환급방식으로 지급한다.

제100조의28(유가환급금 지급대상) ①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서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자 또는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기준소득기간 중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 중에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기준소득기간 동안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3천600만원 이하인 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기준소득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근거한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절에서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이 2천400만원 이하인 자

② 이 절에서 “기준소득기간”이란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경우로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자의 경우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1. 지급대상기간 중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가목에 따른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만 있는 자

2. 농어민 또는 화물자동차 소유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3. 기준소득기간 중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을 초과한 자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란 지급대상기간 중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37조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고(연말정산을 할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예정인 자를 말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을종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본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 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 중에서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급여액만 있는 자(같은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자에 한한다)로서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 이하에 속하는 경우에는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이 최저임금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을 영위한 자”란 지급대상기간 중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같은 기간 중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폐업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을 영위한 자로 본다.

제100조의29(유가환급금의 산정) ① 제100조의28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유가환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제 환급액은 유가환급금에 지급대상기간 중의 근로제공월수 또는 사업영위월수를 12로 나눈 숫자를 곱하여 산출한다.

1. 제100조의28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구 분	유가환급금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	24만원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초과 3천200만원 이하인 자	18만원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200만원 초과 3천400만원 이하인 자	12만원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400만원 초과 3천600만원 이하인 자	6만원

2. 제100조의28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구 분	유가환급금
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24만원
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 2천130만원 이하인 자	18만원
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130만원 초과 2천260만원 이하인 자	12만원
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260만원 초과 2천400만원 이하인 자	6만원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기준소득기간 중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총급여액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급여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00조의28제6항에 해당하는 자의 유가환급금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제 환급액은 유가환급금에 최저임금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통하여 환산한 근로제공월수를 12로 나눈 숫자를 곱하여 산출한다.

구 분	유가환급금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	24만원
총급여액이 3천만원 초과 3천200만원 이하인 자	18만원
총급여액이 3천200만원 초과 3천400만원 이하인 자	12만원
총급여액이 3천400만원 초과 3천600만원 이하인 자	6만원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근로제공월수 및 사업영위월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0(유가환급금의 신청) ① 유가환급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유가환급금의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 당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2008년 10월에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같은 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통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2. 신청 당시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2008년 11월에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

2. 지급대상기간 중 신규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또는 퇴직·폐업한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을종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6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는 2008년 11월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유가환급금의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1(유가환급금의 결정 및 환급) ① 제100조의30에 따라 유가환급금의 환급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이하 이 절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결정한 관할세무서장은 신청 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1조(충당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를 준용하여 유가환급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이내에 유가환급금을 환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환급금의 환급 기한을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환급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제2항의 기한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제100조의30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일괄 통지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유가환급금은 제100조의30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신청한 자가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유가환급금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와 「국세징수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유가환급금의 결정 방법, 환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2(일용근로자에 대한 환급 등) 제100조의30 및 제100조의31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28제6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결정·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0조의31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0조의33(유가환급금의 경정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31에 따라 결정·환급한 금액이 실제 환급되어야 할 금액과 다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유가환급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31에 따라 결정한 유가환급금이 변경된 경우는 그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유가환급금을 환급받은 자가 지급대상기간 중 퇴직함으로써 인하여 제100조의31에 따라 결정·환급한 금액이 실제 환급되어야 할 금액보

다 많아지게 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 시 그 차액을 원천징수하여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유가환급금의 경정 및 과다 환급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4(가산세 등) ① 유가환급금 신청자가 신청한 유가환급금이 제100조의29에 따른 유가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제100조의3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제47조의5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유가환급금 신청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 신청하여 부당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그 초과 신청한 환급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한다.

③ 제100조의30제1항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부당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당환급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한다.

제104조의1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업을 영위하

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스키장업용 토지 및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업용 토지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17(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금융기관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휴면예금출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1조의2의 제목 중 “경형자동차”를 “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11조의2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자동차(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형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2009년 6월 30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소유한 소형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그중 1대에 대하여만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닌 경우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11조의2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00원”을 “250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제111조의2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중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

다.

제112조 및 제1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장에서 “골프장”이라 한다)의 입장행위(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 걸쳐 소재하는 골프장으로서 골프장의 전체 면적에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골프장으로 본다.

제112조의2(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골프장에 대한 조치)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04조의12제2항제3호에 따른 골프장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과세특례 및 제112조에 따른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특례가 해당 지역의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26조”를 “제26조, 제30조의2”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 중 “제8조”를 “제8조, 제8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6조”를 “제26조, 제30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85조의6, 제102조, 제121조의17제2항”을 “제85조의6 및 제10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26조”를 “제26조, 제30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85조의6, 제102조 및 제121조의17제2항”을 “제85조의6 및 제102조”로 한다.

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24조 내지 제26조”를 각각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로, “제104조의8”을 각각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의2제2항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제·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여 받는 수입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

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 중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

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골프장에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이 법 시행 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를 “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및 같은 법 제100조의34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유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최대 24만원까지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소형 화물자동차 사용 연료에 대하여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신설하며,

기업의 장기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명당 3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법 제7조의2)
- (1) 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업이 구매대금을 현금성 결제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어음발행을 줄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2)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네트워크론으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4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 간 모든 현금성 결제에 대하여 결제금액의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4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함.
 - (3) 앞으로 어음발행이 축소되어 납품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됨.

나.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전액 면제(법 제8조의2 신설)

- (1)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부당히 낮추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상생 협력관계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동반관계를 유지하게 할 필요가 있음.
- (2) 대기업이 상생 협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액 면제함.
- (3) 구매기업이 적정한 납품단가를 보장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법 제11조제1항)

- (1) 기업이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

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법 제25조의2)

- (1) 고유가 극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에너지절약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하고, 이 제도의 적용기간을 2008년 13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함.
- (3) 앞으로 에너지절약시설 등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법 제30조의2 신설)

- (1)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2) 중소기업이 2007년 12월 31일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2009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납부할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1명당 30만원씩을 공제함.
- (3)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바. 유가환급금의 지급(법 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4까지 신설)

- (1) 유가상승에 따른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 (2)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명당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함.

사.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및 개별소비세 면제(법 제104조의12, 법 제112조 신설)

- (1) 골프장 그린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조세부담을 줄여 그린피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2)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를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에 추가하고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함.
- (3) 해외 골프수요를 수도권 밖 소재 골프장으로 전환·흡수함으로써 서비스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아. 휴면예금 출연시 손금산입 특례(법 제104조의17 신설)

- (1) 금융기관이 설립초기의 휴면예금관리재단에 휴면예금을 출연하는 경우 발생하는 법인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2)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출연금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 (3)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초기재원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자. 소형 화물자동차 사용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법 제111조의2제2항 신설)

- (1)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 (2) 2009년 6월 30일까지 소형 화물자동차 사용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10만원 한도에서 환급함.
- (3)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